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100
----------	--------

제출년월일 : 2025. 8.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마포365구민센터와 공덕 실뿌리복지센터 피트니스센터 개장에 따른 체육 시설 추가 및 사용료 범위를 설정하고, 서울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이 인근 체육시설 이용 시 사용료 감면 조항 신설

2. 주요내용

- 가. 화력발전소 등 기피시설 주변 주민이 인근 체육시설 이용 시 사용료 감면 조항 신설 (안 제11조 제3항)
- 나. 마포365구민센터, 공덕 실뿌리복지센터 피트니스센터 체육시설 추가(별표1)
- 다. 마포365구민센터, 공덕 실뿌리복지센터 피트니스센터 사용료 등 범위 규정(별표2~별표4)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56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여부: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5. 7. 17.~8. 6. (제출된 의견 없음)

2)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원안 동의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4) 고용협력과의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원안 동의

5) 가족정책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을 신설하고, 기존 제3항부터 제7항은 제4항부터 제8항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화력발전소 등 기피시설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는 주변 지역 주민이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화력발전소 등 기피시설 인근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100분의 50 범위에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지역과 사용료는 환경영향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제3조 관련)

명칭	구분	기능	위치
염리 생활체육관	종합 체육관	농구, 배구, 배드민턴 등 체육활동 및 행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 61(염리동)
	다목적 체육실	요가, 체조, 검도 등 체육활동	
마포구민 체육센터	종합 체육관	농구, 배구, 배드민턴, 핸드볼 등 체육활동 및 행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25길 190 (망원동)
	다목적 소체육관	요가, 체조, 스포츠댄스, 에어로빅 등 체육활동	
	체력단련실	헬스, 체력단련장	
	볼링장	볼링	
망원나들목 체육관	종합 체육관	배드민턴 등 체육활동 및 행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1길 73(망원동)
	체력단련실	헬스, 체력단련장	
성미산체육관	종합 체육관	배드민턴 등 체육활동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15길 31-11 (성산동)
	다목적 체육실	요가, 댄스 등 체육활동	
마포 365 구민센터	종합 체육관	농구, 배드민턴 등 체육활동 및 행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98(당인동)
	다목적체육관	요가, 댄스, 음악줄넘기, 호신술, 유아체육, 팝송, 노래교실, 바둑교실, 토탈공예, 서예교실, 도자기 교실등	
	체력단련실	헬스, 체력단련장	
	건강관리센터	남·여 사우나	
공덕 실뿌리복지센터 피트니스센터		헬스, 체력단련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19 (공덕동)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풋살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25길 190 (망원동)
		축구장, 족구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소프트테니스장 <신설, 2021.12.30.>	
	인라인트랙, 조깅트랙, 자전거트랙		
망원나들목 테니스장		테니스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1길 39(망원동)
와우산 배드민턴장		배드민턴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30길 87(창전동)
만리배수지 배드민턴장		배드민턴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일7길 16(아현동)
연남동 녹지대 배드민턴장		배드민턴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243(연남동)
상암저류지 인라인트랙		인라인트랙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633(상암동)
성산 당구장		당구아카데미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35(성산동)

[별표 2]

개인사용료의 범위(제8조 관련)

(단위 : 원)

명칭	구분	대상	사용료	비고
염리생활 체육관	종합 체육관	성인	2,000 ~ 4,000	※ 사용료 기준 - 1회 2시간 - 월사용권은 1회 사용료에 20을 곱한 금액 한도 내로 함 ※ 성 인 19세 이상 청소년 13세 ~ 18세 어린이 12세 이하 ※ 개인사물함 특대 : 7,000원 대 : 5,000원 중 : 3,000원 소 : 2,000원 ※ 볼링화 대여 : 1,000원 ※ 성산 당구장은 프로그램 회원인 경우에 한하여 개인사용 가능 ※ 망원나들목 테니스장, 망원유수 지 소프트테니스장 사용료 기준 <개정 2021.12.30.> - 1면 2시간
		청소년	1,500 ~ 3,000	
		어린이	1,000 ~ 2,500	
마포구민 체육센터	종합 체육관, 다목적 소체육관	성인	2,000 ~ 4,000	
		청소년	1,500 ~ 3,000	
		어린이	1,000 ~ 2,500	
	헬스장	성인	2,000 ~ 4,000	
		청소년	1,500 ~ 3,000	
	볼링장	성인	1게임당 2,500 ~ 4,500	
청소년 어린이		1게임당 2,000 ~ 4,000		
망원나들목 체육관	종합 체육관	성인	2,000 ~ 4,000	
		청소년	1,500 ~ 3,000	
		어린이	1,000 ~ 2,500	
	헬스장	성인	2,000 ~ 4,000	
		청소년	1,500 ~ 3,000	
마포 365 구민센터	종합 체육관	성인	2,000 ~ 4,000	
		청소년	1,500 ~ 3,000	
		어린이	1,000 ~ 2,500	
	헬스장	성인	2,000 ~ 4,000	
		청소년·어린이	1,500 ~ 3,000	
	건강 관리센터	성인·청소년	7,000 ~ 12,000	
		어린이	6,000 ~ 12,000	
공덕 실뿌리복지센터 피트니스센터	헬스장	성인	2,000 ~ 4,000	
		청소년·어린이	1,500 ~ 3,000	
와우산 배드민턴장			2,000 ~ 4,000	
망원나들목 테니스장			10,000 ~ 18,000	
망원유수지 소프트테니스장 <신설, 2021.12.30.>				
성산 당구장		성인	4,000 ~ 7,000	
		청소년	3,000 ~ 6,000	
1. 이용자가 허가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매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10%를, 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3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와우산 배드민턴장은 냉난방시설, 샤워실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설치·보완할 때 까지 사용료를 면제한다. 3. 구에서 관리·운영하는 성미산체육관 등 기타 체육시설은 위와 유사한 체육시설을 준용한다.				

[별표 3]

전용사용료의 범위(제8조 관련)

(단위 : 원)

명칭	구분	사용료		비고
		체육경기	일반행사	
염리생활 체육관	종합 체육관	55,000 ~ 100,000	80,000 ~ 160,000	※ 사용료 기준 : 2시간
	다목적 체육실	15,000 ~ 40,000	30,000 ~ 60,000	
마포구민 체육센터	종합 체육관	100,000 ~ 200,000	200,000 ~ 400,000	※ 사용료 기준 : 2시간, 농구코트 1면당
	다목적 소체육관(大)	30,000 ~ 60,000	60,000 ~ 120,000	※ 사용료 기준 : 2시간
	다목적 소체육관(中)	15,000 ~ 40,000	30,000 ~ 60,000	
	다목적 소체육관(小)	10,000 ~ 30,000	20,000 ~ 40,000	
	볼링장	(체육경기 시) 평일 : 50,000 ~ 70,000 토요일·공휴일 : 60,000 ~ 80,000		※ 사용료 기준 : 2시간, 2레인
마포 365 구민센터	종합체육관· 다목적체육실	100,000 ~ 200,000	200,000 ~ 400,000	※ 사용료 기준 : 2시간, 농구코트 1면당
	GX3· 다목적실1	30,000 ~ 60,000	60,000 ~ 120,000	※ 사용료 기준 : 2시간
	GX1· GX2· 다목적실2	15,000 ~ 40,000	30,000 ~ 60,000	
	다목적실3	10,000 ~ 30,000	20,000 ~ 40,000	
망원나들목 테니스장 망원유수지 소프트테니스장 <신설, 2021.12.30.>	90,000 ~ 150,000		※ 사용료 기준 : 1면, 10시간	
망원유수지 풋살장	30,000 ~ 80,000	-	※ 사용료 기준 : 2시간, 1면당	
성산 당구장	10,000 ~ 30,000	-	※ 사용료 기준 : 2시간, 1테이블당	
1. 일반행사란 체육경기가 아닌 문화, 예술, 교육, 발표 등 그 밖의 행사를 말한다. 2. 이용자가 허가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매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10%를, 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3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3. 음향, 냉난방 등의 사용료는 별도로 한다. 4. 구에서 관리·운영하는 성미산체육관, 망원나들목 체육관 등 기타 체육시설은 위와 유사한 체육시설을 준용한다.				

[별표 4]

그 밖의 시설 사용료의 범위(제8조 관련)

(단위 : 원)

명칭	구분	사용료		비고
		음향장비	냉난방	
염리생활 체육관	종합 체육관	15,000 ~ 25,000	30,000 ~ 40,000	※ 사용료 기준 : 2시간, 4계절 권장온도
	다목적 체육실	10,000 ~ 15,000	10,000 ~ 20,000	
마포구민 체육센터	종합 체육관	15,000 ~ 25,000	40,000 ~ 60,000	
	다목적 소체육관(大)	10,000 ~ 15,000	15,000 ~ 25,000	
	다목적 소체육관(中)	10,000 ~ 15,000	10,000 ~ 20,000	
	다목적 소체육관(小)	10,000 ~ 15,000	5,000 ~ 10,000	
마포 365 구민센터	종합체육관· 다목적체육실	15,000 ~ 25,000	40,000 ~ 60,000	
	GX3· 다목적실1	10,000 ~ 15,000	15,000 ~ 25,000	
	GX1· GX2· 다목적실2	10,000 ~ 15,000	10,000 ~ 20,000	
	다목적실3	10,000 ~ 15,000	5,000 ~ 10,000	

1. 이용자가 허가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매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10%를, 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3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연습(리허설) 시간의 사용료는 50%를 할인한다.
3. 구에서 관리·운영하는 성미산체육관, 망원나들목 체육관 등 기타 체육시설은 위와 유사한 체육시설을 준용한다.

체육센터	체육관	핸드볼 등 체육활동 및 행사	마포구 월드컵로25길 190 (망원동)
	다목적 소체육관	요가, 체조, 스포츠댄스, 에어로빅 등 체육활동	
	체력단련실	헬스, 체력단련장	
	볼링장	볼링	
망원나들목 체육관	종합 체육관	배드민턴 등 체육활동 및 행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1길 73(망원동)
	체력단련실	헬스, 체력단련장	
성미산체육관	종합 체육관	배드민턴 등 체육활동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15길 31-11 (성산동)
	다목적 체육실	요가, 댄스 등 체육활동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풋살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25길 190 (망원동)	
	축구장, 족구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소프트테니스장 <신설, 2021.12.30.>		
	인라인트랙, 조깅트랙, 자전거트랙		
망원나들목 테니스장	테니스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1길 39(망원동)	
와우산 배드민턴장	배드민턴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30길 87(창전동)	
만리배수지 배드민턴장	배드민턴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일7길 16(아현동)	
연남동 녹지대 배드민턴장	배드민턴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243(연남동)	
상암저류지 인라인트랙	인라인트랙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633(상암동)	
성산 당구장	당구아카데미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35(성산동)	

체육센터	체육관	틴, 핸드볼 등 체육활동 및 행사	월드컵로25길 190 (망원동)
	다목적 소체육관	요가, 체조, 스포츠댄스, 에어로빅 등 체육활동	
	체력 단련실	헬스, 체력단련장	
	볼링장	볼링	
망원나들목 체육관	종합 체육관	배드민턴 등 체육활동 및 행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1길 73(망원동)
	체력 단련실	헬스, 체력단련장	
성미산체육관	종합 체육관	배드민턴 등 체육활동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15길 31-11 (성산동)
	다목적 체육실	요가, 댄스 등 체육활동	
마포 365 구민센터	종합 체육관	농구, 배드민턴 등 체육활동 및 행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98 (당인동)
	다목적 체육관	요가, 댄스, 음악줄넘기, 호신술, 유아체육, 팝송, 노래교실, 마독교실, 토탈공예, 서예교실, 도자기 교실등	
	체력 단련실	헬스, 체력단련장	
	건강관리 센터	남·여 사우나	
공덕 실뿌리복지센터 피트니스센터		헬스, 체력단련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19 (공덕동)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풋살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25길 190 (망원동)	
	축구장, 족구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소프트테니스장 <신설, 2021.12.30.>		
	인라인트랙, 조깅트랙, 자전거트랙		
망원나들목 테니스장	테니스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1길 39(망원동)	
와우산 배드민턴장	배드민턴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30길 87(창전동)	
만리배수지 배드민턴장	배드민턴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일7길 16(아현동)	
연남동 녹지대 배드민턴장	배드민턴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243(연남동)	
상암저류지 인라인트랙	인라인트랙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633(상암동)	
성산 당구장	당구아카데미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35(성산동)	

개인사용료의 범위(제8조 관련)

(단위 : 원)

명칭	구분	대상	사용료	비고
업무생활 체육관	종합 체육관	성인	2,000 ~ 4,000	* 사용료 기준 - 1회 2시간 - 월사용권은 1회 사용료에 20을 곱한 금액 한도 내로 함
		청소년	1,500 ~ 3,000	
		어린이	1,000 ~ 2,500	
마포구민 체육센터	종합 체육관, 다목적 소체육관	성인	2,000 ~ 4,000	* 성 인 19세 이상 청소년 13세 ~ 만18세 어린이 12세 이하
		청소년	1,500 ~ 3,000	
		어린이	1,000 ~ 2,500	
	헬스장	성인	2,000 ~ 4,000	* 개인사물함 특대 : 7,000원 대 : 5,000원 중 : 3,000원 소 : 2,000원
		청소년	1,500 ~ 3,000	
	볼링장	성인	1게임당 2,500 ~ 4,500	* 볼링화 대여 : 1,000원
청소년 어린이		1게임당 2,000 ~ 4,000		
망원나들목 체육관	종합 체육관	성인	2,000 ~ 4,000	* 성산 당구장은 프로그램 회원인 경우에 한하여 개인사용 가능
		청소년	1,500 ~ 3,000	
		어린이	1,000 ~ 2,500	
	헬스장	성인	2,000 ~ 4,000	
		청소년	1,500 ~ 3,000	
와우산 배드민턴장			2,000 ~ 4,000	
망원나들목 테니스장			10,000 ~ 18,000	
망원유수지 소프트테니스장 <신설, 2021.12.30.>			18,000	
성산 당구장		성인	4,000 ~ 7,000	* 성산 당구장은 프로그램 회원인 경우에 한하여 개인사용 가능
		청소년	3,000 ~ 6,000	

1. 이용자가 허가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매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10%를, 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3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와우산 배드민턴장은 냉난방시설, 샤워실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설치·보완할 때까지 사용료를 면제한다.

3. 구에서 관리·운영하는 성미산체육관 등 기타 체육시설은 위와 유사한 체육시설을 준용한다.

개인사용료의 범위(제8조 관련)

(단위 : 원)

명칭	구분	대상	사용료	비고
업무생활 체육관	종합 체육관	성인	2,000 ~ 4,000	* 사용료 기준 - 1회 2시간 - 월사용권은 1회 사용료에 20을 곱한 금액 한도 내로 함
		청소년	1,500 ~ 3,000	
		어린이	1,000 ~ 2,500	
마포구민 체육센터	종합 체육관, 다목적 소체육관	성인	2,000 ~ 4,000	* 성 인 19세 이상 청소년 13세 ~ 18세 어린이 12세 이하
		청소년	1,500 ~ 3,000	
		어린이	1,000 ~ 2,500	
	헬스장	성인	2,000 ~ 4,000	* 개인사물함 특대 : 7,000원 대 : 5,000원 중 : 3,000원 소 : 2,000원
		청소년	1,500 ~ 3,000	
	볼링장	성인	1게임당 2,500 ~ 4,500	* 볼링화 대여 : 1,000원
청소년 어린이		1게임당 2,000 ~ 4,000		
망원나들목 체육관	종합 체육관	성인	2,000 ~ 4,000	* 성산 당구장은 프로그램 회원인 경우에 한하여 개인사용 가능
		청소년	1,500 ~ 3,000	
	헬스장	성인	2,000 ~ 4,000	
		청소년	1,500 ~ 3,000	
마포 365 구민센터	종합 체육관	성인	2,000 ~ 4,000	* 볼링화 대여 : 1,000원
		청소년	1,500 ~ 3,000	
		어린이	1,000 ~ 2,500	
	헬스장	성인	2,000 ~ 4,000	
		청소년·어린이	1,500 ~ 3,000	
건강관리센터	성인·청소년	7,000 ~ 12,000	* 성산 당구장은 프로그램 회원인 경우에 한하여 개인사용 가능	
	어린이	6,000 ~ 12,000		
공덕 실뿌리복지센터 파트너스 센터	헬스장	성인	2,000 ~ 4,000	* 망원나들목 테니스장, 망원유수지 소프트테니스장 사용료 기준 < 개정 2021.12.30. > - 1면 2시간
		청소년·어린이	1,500 ~ 3,000	
와우산 배드민턴장			2,000 ~ 4,000	
망원나들목 테니스장			10,000 ~ 18,000	
망원유수지 소프트테니스장 <신설, 2021.12.30.>			18,000	
성산 당구장		성인	4,000 ~ 7,000	* 성산 당구장은 프로그램 회원인 경우에 한하여 개인사용 가능
		청소년	3,000 ~ 6,000	

1. 이용자가 허가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매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10%를, 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3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와우산 배드민턴장은 냉난방시설, 샤워실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설치·보완할 때까지 사용료를 면제한다.

3. 구에서 관리·운영하는 성미산체육관 등 기타 체육시설은 위와 유사한 체육시설을 준용한다.

[별표 3]

전용료의 범위(제8조 관련)

(단위 : 원)

명칭	구분	사용료		비고
		체육경기	일반행사	
업무생활 체육관	종합 체육관	55,000 ~ 100,000	80,000 ~ 160,000	※ 사용료 기준 : 2시간
	다목적 체육실	15,000 ~ 40,000	30,000 ~ 60,000	
마포구민 체육센터	종합 체육관	100,000 ~ 200,000	200,000 ~ 400,000	※ 사용료 기준 : 2시간, 농구코 트 1면당
	다목적 소체육관(大)	30,000 ~ 60,000	60,000 ~ 120,000	※ 사용료 기준 : 2시간
	다목적 소체육관(中)	15,000 ~ 40,000	30,000 ~ 60,000	
	다목적 소체육관(小)	10,000 ~ 30,000	20,000 ~ 40,000	
	볼링장	(체육경기 시) 평일 : 50,000 ~ 70,000 토요일·공휴일 : 60,000 ~ 80,000		※ 사용료 기준 : 2시간, 2레인
망원나들목 테니스장	90,000 ~ 150,000		※ 사용료 기준 : 1면, 10시간	
망원유수지 소프트테니스장 <신설, 2021.12.30.>				
망원유수지 풋살장	30,000 ~ 80,000	-	※ 사용료 기준 : 2시간, 1면당	
성산 당구장	10,000 ~ 30,000	-	※ 사용료 기준 : 2시간, 1테이 블당	
1. 일반행사란 체육경기가 아닌 문화, 예술, 교육, 발표 등 그 밖의 행사를 말한다. 2. 이용자가 허가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매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10%를, 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3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3. 음향, 냉난방 등의 사용료는 별도로 한다. 4. 구에서 관리·운영하는 성미산체육관, 망원나들목 체육관 등 기타 체육시설은 위와 유사한 체육시설을 준용한다.				

[별표 3]

전용료의 범위(제8조 관련)

(단위 : 원)

명칭	구분	사용료		비고
		체육경기	일반행사	
업무생활 체육관	종합 체육관	55,000 ~ 100,000	80,000 ~ 160,000	※ 사용료 기준 : 2시 간
	다목적 체육실	15,000 ~ 40,000	30,000 ~ 60,000	
마포구 민 체육센 터	종합 체육관	100,000 ~ 200,000	200,000 ~ 400,000	※ 사용료 기준 : 2시간, 농구코트 1면 당
	다목적 소체육관(大)	30,000 ~ 60,000	60,000 ~ 120,000	※ 사용료 기준 : 2시 간
	다목적 소체육관(中)	15,000 ~ 40,000	30,000 ~ 60,000	
	다목적 소체육관(小)	10,000 ~ 30,000	20,000 ~ 40,000	
	볼링장	(체육경기 시) 평일 : 50,000 ~ 70,000 토요일·공휴일 : 60,000 ~ 80,000		※ 사용료 기준 : 2시간, 2레인
마포 365 구민 센터	종합체육관· 다목적 체육실	100,000 ~ 200,000	200,000 ~ 400,000	※ 사용료 기준 : 2시간, 농구코트 1면 당
	GX3· 다목적실1	30,000 ~ 60,000	60,000 ~ 120,000	※ 사용료 기준 : 2시 간
	GX1· GX2· 다목적실2	15,000 ~ 40,000	30,000 ~ 60,000	
	다목적실3	10,000 ~ 30,000	20,000 ~ 40,000	
망원나들목 테니스장	90,000 ~ 150,000		※ 사용료 기준 : 1면, 10시간	
망원유수지 소프트테니스장 <신설, 2021.12.30.>				
망원유수지 풋살장	30,000 ~ 80,000	-	※ 사용료 기준 : 2시간, 1면당	
성산 당구장	10,000 ~ 30,000	-	※ 사용료 기준 : 2시간, 1테이블당	
1. 일반행사란 체육경기가 아닌 문화, 예술, 교육, 발표 등 그 밖의				

[별표 4]

그 밖의 시설 사용료의 범위(제8조 관련)

명칭	구분	사용료		비고	
		음향장비	냉난방		
염리생활체육관	종합체육관	15,000 ~ 25,000	30,000 ~ 40,000	※ 사용료 기준 : 2시간, 4계절 권장온도	
	다목적체육실	10,000 ~ 15,000	10,000 ~ 20,000		
마포구민체육센터	종합체육관	15,000 ~ 25,000	40,000 ~ 60,000		
	다목적소체육관(大)	10,000 ~ 15,000	15,000 ~ 25,000		
	다목적소체육관(中)	10,000 ~ 15,000	10,000 ~ 20,000		
	다목적소체육관(小)	10,000 ~ 15,000	5,000 ~ 10,000		
<p>1. 이용자가 허가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매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10%를, 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3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p> <p>2. 연습(리허설) 시간의 사용료는 50%를 할인한다.</p> <p>3. 구에서 관리·운영하는 성미산체육관, 망원나들목 체육관 등 기타 체육시설은 위와 유사한 체육시설을 준용한다.</p>					

[별표 4]

그 밖의 시설 사용료의 범위(제8조 관련)

명칭	구분	사용료		비고
		음향장비	냉난방	
염리생활체육관	종합체육관	15,000 ~ 25,000	30,000 ~ 40,000	※ 사용료 기준 : 2시간, 4계절 권장온도
	다목적체육실	10,000 ~ 15,000	10,000 ~ 20,000	
마포구민체육센터	종합체육관	15,000 ~ 25,000	40,000 ~ 60,000	
	다목적소체육관(大)	10,000 ~ 15,000	15,000 ~ 25,000	
	다목적소체육관(中)	10,000 ~ 15,000	10,000 ~ 20,000	
	다목적소체육관(小)	10,000 ~ 15,000	5,000 ~ 10,000	
마포 365 구민센터	종합체육관·다목적체육실	15,000 ~ 25,000	40,000 ~ 60,000	
	GX3·다목적실1	10,000 ~ 15,000	15,000 ~ 25,000	
	GX1·GX2·다목적실2	10,000 ~ 15,000	10,000 ~ 20,000	
	다목적실3	10,000 ~ 15,000	5,000 ~ 10,000	
<p>1. 이용자가 허가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매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10%를, 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3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p> <p>2. 연습(리허설) 시간의 사용료는 50%를 할인한다.</p> <p>3. 구에서 관리·운영하는 성미산체육관, 망원나들목 체육관 등 기타 체육시설은 위와 유사한 체육시설을 준용한다.</p>				

행사를 말한다.

2. 이용자가 허가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매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10%를, 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3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3. 음향, 냉난방 등의 사용료는 별도로 한다.

4. 구에서 관리·운영하는 성미산체육관, 망원나들목 체육관 등 기타 체육시설은 위와 유사한 체육시설을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사용료 등)
-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 및 할증)
-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운영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세입·세출 예산 편성 (운영수익 적자 예상)
- 비용추계기간 : 2025. 1. ~ 2029. 12.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6개월분)					
세입	체육시설	공유재산임대료		177,910	186,806	196,146	205,953	216,251	983,066
		프로그램 수강료		588,588	1,196,781	1,232,683	1,269,643	1,307,713	5,595,408
		시설이용료		127,158	216,177	222,662	229,342	236,222	1,031,561
		대관료		57,760	114,048	117,469	120,994	124,623	534,894
		사물함사용료		11,400	21,636	22,285	22,953	23,642	101,916
소계(a)			962,816	1,735,448	1,791,245	1,848,885	1,908,451	8,246,845	
세출	인력운영비	인건비		820,011	1,290,912	1,337,145	1,396,015	1,467,730	6,311,813
		일반운영비		21,610	24,830	24,830	24,830	24,830	120,930
		직무수행경비		9,555	25,440	25,440	25,440	25,440	111,315
		여비		2,400	8,640	8,640	8,640	8,640	36,960
		포상금		0	58,286	62,366	66,732	71,403	258,787
		연금부담금		183,834	257,392	274,140	292,024	311,123	1,318,513
	프로그램 운영지원	프로그램 수강료		384,032	780,794	795,091	809,924	824,907	3,594,748
		일반운영비		50,360	43,040	43,040	43,040	43,040	222,520
	쾌적한 환경 조성	일반운영비		167,375	221,564	201,564	201,564	201,564	993,631
		자산취득비		335,172	17,000	17,000	17,000	17,000	403,172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705,158	827,050	888,784	956,661	1,031,263	4,408,916
		업무추진비		5,820	9,720	9,720	9,720	9,720	44,700
	소계(b)			2,685,327	3,564,668	3,687,760	3,851,590	4,036,660	17,826,005
□ 총 비용(a-b)			△1,722,511	△1,829,220	△1,896,515	△2,002,705	△2,128,209	△9,579,160	

4. 재원조달 방안

- 민간위탁금 세출 예산 편성(구비100%)

5. 덧붙이는 의견

- 세입_프로그램수강료의 경우 할인 등록율을 반영하여 산출하지 않음, 할인 등록율에 따라 프로그램 수강료 변동(수입금 감소) 됨.
- 인건비 상승률 직종에 따라 3~7%책정(기본급 상승률 3%에 호봉상승률 4% 적용)
- 공공요금 상승률 연10% 책정(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요금)
- 프로그램 강사료 연1% 상승 책정(프로그램 신설 등)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교육체육국 체육진흥과 남유민
연 락 처	02-3153-9856